

차 · 별 · 없 · 는 · 사 · 회 · 를 · 열 · 어 · 감 · 니 · 다

# 장애인 확대 대응 안내서

경찰관련



# 인권이란

**인권**이란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렇듯 인권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기에  
지역사회 내에서는 장애·비장애를 떠나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장애**를 이유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하여는 **다름**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의심상황을 발견하였을 때  
**무관심**하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학대 대응 안내서 (경찰관 편)

---

### CONTENTS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개	02
2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	04
3	장애인에 대한 오해	08
4	장애가 있는 민원인을 대할 때	12
5	장애인학대 및 관련범죄	16
6	장애인학대 인지시 업무협력	18
7	수사과정에서의 장애인 지원	20
8	장애인 형사절차 지원방법	22
9	장애유형별 민원 상담 방법	26
10	수사과정에서의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규정	30

# 경기북부장래인권익용호기관 소개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용호기관**  
Gyeonggibukbu Advocacy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경기북부장래인권익용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된  
**장애인 학대 및 차별 대응 전문기관**입니다.

경기북부장래인권익용호기관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장애인 학대 및 차별 신고를 받고  
피해장애인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 경기북부장래인권익용호기관은 어떤 일을 하나요?

경기북부장래인권익용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장애인 차별 상담과 현장조사,  
피해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장애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미등록 장애인도 지원합니다.

## ◎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학대피해자와 행위자의 분리가 필요할 때
  - 쉼터 등 안전한 장소로 입소 지원
  - 치료나 즉각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인도
- 장애인이 형사사범 절차 진행시 조력 지원이 필요할 때
  - 행위자의 처벌을 위한 고소나 고발 절차 지원
  - 신뢰관계인 동석 등 다양한 법률지원
-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가 필요할 때
  - 미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때
  - 피해장애인에게 긴급생계비 및 주거 지원 등이 필요할 때
  - 피해장애인에게 심리상담 의료 등 지원이 필요할 때
  -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생길 때

- 장애인이 경찰서를 찾아와서 지원 요청을 하는데, 난감할 때
- 장애인을 만났는데,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때
- 장애인을 긴급히 조사해야 하는데, 가족 등 관련인 연락이 안 될 때
- 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나 법률지원이 필요할 때

그럴때는 **1644-8295**로 전화 하시면 됩니다.



# 2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

## 정의 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와 ‘장애인’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하며, ‘장애인’이란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유형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 절단장애 · 관절장애 · 척추장애 · 지체기능장애 · 변형장애
		뇌병변장애	·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
		시각장애	· 시력장애 · 시야결손장애 · 겹보임 (복시)
		청각장애	· 청력장애 ·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 언어장애 · 음성장애
		안면장애	· 얼굴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 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장루 · 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 또는 방광루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 소아기 자폐증 · 비전형적 자폐증
	정신장애	정신장애	· 조현병 · 조현정동장애 · 양극성 정동장애 · 재발성 우울장애

개념

# 장애는 상대적이고 사회적인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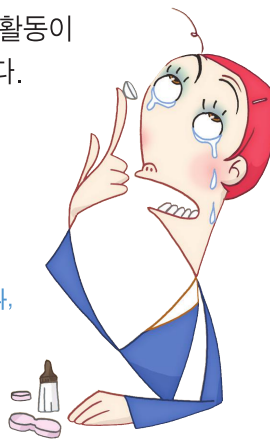
눈이 나쁘다고 시각장애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경을 사용하면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장애는 개인의 물리적·정신적 손상과 사회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외국의 경우, 장애를 어떤 범주로 규정하기보다  
'현재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임산부, 고도비만, 외국인 이주자 등을 한시적으로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와 제도 등을 개선하여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기회와 선택 그리고 활동이  
제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  
어디까지가 장애일까?  
렌즈 없이는 보이는게 없는 나,  
나도 장애인인가?



보청기가 보조기면  
안경도 보조기.....?  
그럼, 나도 장애인?



TIP

## 장애인 등록이 안된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장애인이 아닌데...  
이런 경우에도 장애인으로서의 권리가 보장 되나요 ?

장애인 등록(제도)은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일 뿐,  
장애인으로서의 권리는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생활속의 제약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 모두 보장됩니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장애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지원합니다.

# 장애자? 장애우? 장애인!

## ‘장애인’ 이 맞는 표현입니다

장애자의 ‘자’ 는 한자로 놈 자(者) 를 사용하며

이러한 표현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는 인식과 함께 변화하였습니다.

## ‘장애우’ 는 왜 사용하면 안되나요?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모두와 친구(友:벗 우)가 되어야하는 것처럼 강제하면서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평등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 장애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비장애인’

‘장애인’ 에 대비되는, 장애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의 표현은 ‘비장애인’ 입니다.

‘정상인’ ‘일반인’ 이라는 말에는 장애인은 ‘비정상’ ‘특별한’ 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됩니다.

‘장애가 있다 / 없다’ 의 차이만을 나타내는 ‘비장애인’ 이 맞는 표현입니다.

장애인에 대비되는 표현을 어떤 말로 사용할지는 그 사회의 인권수준을 반영한 약속입니다.

## 잘못된 표현 VS 올바른 표현

잘못된 표현	올바른 표현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를 갖고 있는
꿀 먹은 병어리	적절하게 의사표현을 못하게 되는 경우
눈먼 돈	관리 안 되는 돈
병어리 냉가슴 앓다	말도 못 하고 혼자서 가슴만 답답하다
병어리 장갑	손모아 장갑 엄지손 장갑
외눈박이의 시각	왜곡된 시각
정신지체	지적장애
절름발이 정책	균형이 맞지 않는 정책
눈깔이 멀었냐?	똑바로 보라 제대로 판단해라, 그것도 못 보냐?
병신 육갑을 한다.	어리숙하게 행동하지 마라, 상황판단을 잘해라
지랄한다 (뇌전증을 비하하는 용어)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가볍게 굴지 마라, 생떼 쓰지 말라
귀머거리 삼 년, 병어리 삼 년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불구가 되다	장애를 갖게 되다
눈 뜬 장님	보고도 판단을 못 하는
장님 코끼리 뒷다리만 지기	전체를 모르면서 하는 어리석은 판단

### TIP

### ‘장애인’ VS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공식적인 용어는 ‘장애인’입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대면한 장애인에게 “장애인이세요?” 혹은 “장애인 000씨” 라고 부르면 불쾌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그냥 “000씨” 라고 이름을 부르거나, 장애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00장애가 있으신가요?” 라고 묻는 것이 좋습니다.

“000씨”  
청각장애가 있으신가요?



# 3 장애인에 대한 오해

## 오해 장애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무조건 보호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묻고 장애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장애유형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해

## 장애인은 인지와 판단이 어렵다?

장애인은 각자가 살아온 환경과 장애 유형에 따라 인지와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뇌병변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의 외견상 보이는 행동이나 언어표현에서의 어려움을 보고 인지장애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는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편견없이 대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해

## 시각장애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모든 시각장애인은 앞을 전혀 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은 빛과 명암 형태 등을 인식하는 정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  
글자를 크게 작성하거나 또는 계단의 층 끝단에 색상을 다르게 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점자는 모든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 주요 문자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기와 프로그램등이 점점 발달하면서  
화면읽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시각장애인의 비율이  
50%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해

## 모든 청각장애인은 모두 수어를 사용한다?

처음 청각장애인을 만나게 되면

‘수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대화하지...?’ 라고 당황하게 되는데  
실제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입모양을 보고 소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당사자에게 확인하고  
수어, 구화, 필담 등 적절한 방식으로 소통하면 됩니다 .



오해

## 지적장애인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지적장애인은 일상생활 및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간혹 지적장애인을 나이에 맞지 않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에 맞는 태도 호칭 그리고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 .

인지와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며,  
그러한 지원을 통해 지적장애인도  
지역사회 안에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합니다.

오해

## 자폐장애인은 특별한 사람이다?

자폐성 장애인 중에는 특정 분야에 남다른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 자폐성 장애인은 특별한 사람일 것이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인은 각자 고유의 행동방식과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 차이는 매우 크고, 매우 다양합니다.

선입견을 배제하고 당사자의 행동방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와 긍정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해

## 범죄자 중에는 정신장애인이 많다?

언론에서 반사회적 범죄와 관련하여 피의자를 정신장애인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보도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나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보도자료 배포 시 용어 사용에 유의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화재사건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옆집 사람이 정신장애인이라며... 아이, 무서워~



무서워할 거 없어 정신이상자와 정신장애인은 다르니까~

## 4 장애가 있는 민원인을 대할 때

### 첫째 물어보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일방적·형식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됩니다.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먼저 장애인에게 지원이 필요한지 아닌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물어보고  
그것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원에 대한 필요여부를 장애당사자가 직접 표현하거나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기관에 지원에 대하여 반드시 문의하여야 합니다.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복지카드에 기재된 내용으로 장애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중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TIP** 복지카드의 종류와 장애유형 -----

복지카드 일반형

복지카드 통합형

신용/직불/교통카드 통합형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복지카드 표기** (2019년 07월 이후)

변경 전: 장애등급	변경 후: 장애정도
1급, 2급, 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급, 5급, 6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장애유형은 뒷면에 표기되어 있으니  
필히 뒷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둘째 존중하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일방적·형식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됩니다.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먼저 장애인에게 지원이 필요한지 아닌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물어보고  
그것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복지카드에 기재된 내용으로 장애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중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화의 주체인 당사자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세째

## 쉬운 말 사용하기

전문 용어나 추상적 단어,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단어,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해야 합니다.

네째

## 확인하기

장애인 당사자의 말을 알아듣기 힘든 경우  
추측하거나 알아듣는 척하는 것보다 다시 물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유형에 따라,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습관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네' 라고 긍정의 신호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 5 장애인학대 및 관련 범죄

##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

### 신체적학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 정서적학대



언어적·비언어적 방식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학대



성희롱, (준)강제추행, (준)강간, 성 매매 등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

### 경제적착취



노동력 착취, (준)사기, 횡령, 배임, 공갈 등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행위

### 유기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는 행위

### 방임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 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는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살인, 폭행, 상해, 유기,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강요, 사기,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성매매 강요 등이 포함됨.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항

1.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2.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3.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4.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5. 「형법」 제2편 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6. 「형법」 제2편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사),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및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7.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사),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8. 「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9. 「형법」 제2편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10.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1.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자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의 죄
12. 「형법」 제2편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증제)의 죄
13. 「형법」 제2편 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14. 제8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의 죄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의 죄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및 제11호의 죄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6 장애인학대 인지시 업무협력

‘사법경찰관리는 장애인 사망 및 상해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14항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협의를 통해 장애인 사망, 장애인 상해, 가정폭력 시설내 학대, 중대사건을 통보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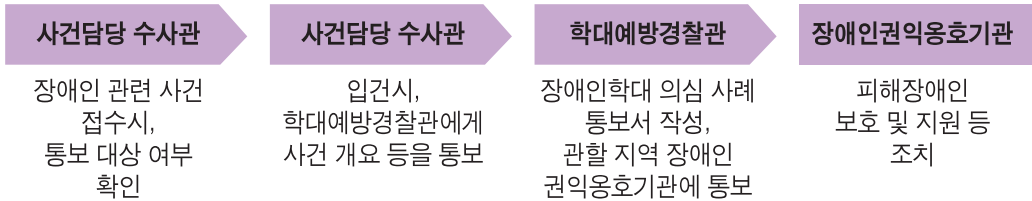
## 통보 대상 사건

<b>장애인 사망</b>	살인, 자살, 상해, 폭행, 감금, 유기, 방임 등으로 인한 사망이 의심되는 경우 ※ 실족사 등 단순사고사, 교통사고 제외
<b>장애인 상해</b>	공동폭행, 특수폭행, 공동상해, 중상해, 성범죄에 따른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지극히 경미한 상해, 단순한 과실 치상, 교통사고 제외
<b>가정폭력</b>	피해자가 장애인인 가정폭력으로 피해장애인이 저항하기 어려운 경우, 일방적·상습적으로 폭력이 발생한 경우 ※ 경미한 일회성 다툼 등으로 입건치 않고 현장에서 종결한 사건은 제외
<b>시설내 학대</b>	거주시설, 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 등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된 경우
<b>중대사건</b>	언론 보도사건, 노동력 착취 사건, 장애인 피해자 3명 이상 ※ 노동력 착취 사건: 약취, 유인, 공갈, 감금, 준사기 등 장애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사건 (단순 임금체불 사건은 제외)

\* 입건하지 않았으나 장애인에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권익옹호기관 통보, 지역 유관기관에 연계 등을 통한 지원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통보 절차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통보대상인 경우  
학대예방경찰관(APO)은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통보 하여야 합니다.



- \* 현장 종결되어 입건하지 않은 사건은 미통보
- \* 입건시 통보치 않은 상황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 처분이 이뤄진 사건은 미통보

### TIP

## 자주 묻는 질문

### 1. 피해자나 가해자에게 통보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당사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2. 현장 출동시 동행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건 통보의 형식으로 해야 하나요?

동행 요청은 꼭 사건통보 양식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내용의 공유, 이후 원활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통보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의 상호 동행출동이 필요한 경우의 예

- ① 피해자에 대한 응급보호나 의료기관 인도 등 보호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 ② 신속한 증거보전이 필요하거나 조사방해로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 ③ 피해자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④ 그 밖에 상호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경우 등

### 3.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통보 이후 어떤 지원을 하나요?

피해자와 보호자 등을 만나 조사와 상담을 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필요한 의료, 사법, 심리상담, 주거, 복지자원 연계 등을 지원하며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7 수사과정에서의 장애인 지원

## 확대 피해 장애인 지원 제도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 장애인 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5)

경찰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선임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44조)

**보조인 선임** 피해자가 경찰관의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증인으로 참여할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8)

**신뢰관계인 동석** 조사시 피해자의 가족, 친인척, 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 등 피해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누구나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조사에 동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8)

피해자가 13세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신뢰관계인을 동석하도록 하고 있어 발달장애인 등 피해자 조사 시 반드시 신뢰관계인이 동석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 2, 제221조 등)

※ 피의자일 때에는 신뢰관계인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닌 한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직권으로도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으며, 사건관계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35조)

**정당한 편의제공**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

## 장애인 사법지원 인력

구분	신뢰관계인	의사소통조력인	진술조력인	보조인
역할	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조사시 동석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도움	범죄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진술을 도움	피고인 또는 피의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
관련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8 형사소송법 제163조의 2 형사소송법 제221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5 성폭력처벌법 제34조 발달장애인법 제12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6 성폭력처벌법 제3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	형사소송법 제29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8 발달장애인법 제12조
자격	피해자의 가족 등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자격없음)	누구나 (자격없음)	법무부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진술조력인으로 양성하고, 자격을 부여	피의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변호사
지원 대상	모든 장애인 (피해자, 피의자, 장애등록 여부 무관)	모든 장애인 (피해자, 피의자, 장애등록 여부 무관)	범죄피해 장애인	모든 장애인 (피해자, 피의자, 장애등록 여부 무관)
비고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신뢰관계인이 동석해야 함 (피해자, 피의자)	신뢰관계인이 일부 의사소통을 돕는 경우가 많음	진술조력인은 '형사사법절차내에서 중립적 지위에서' 피해자를 도움 (진술조력인의 중립의무는 이익의 대변자로서의 피해자 변호사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특성)  필요시 진술조력인이 신뢰관계인의 역할을 함께 할 수 있음	변호사 외 보조인 선정시 법원의 허가 필요



# 8 장애인 형사절차상 지원 방법

## 사전 사전 확인 사항

- 장애유형**
- 장애인에게 직접 물어보기
  - 복지카드(앞/뒷면 기재 내용)를 통해 확인하기
  - (전화통화시) 사용하고 있는 보장구에 관한 질문 등 간접 정보를 통해 확인하기

**편의제공** 반드시 장애인에게 직접 물어보고  
필요한 편의제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전동 휠체어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 가능한 공간 확보하기

**관계인 동석** 장애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활동지원사 및 가족 등 관계인의 동석 여부를 계획하기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인적 편의** 장애유형에 따라서 필요한 보조인력이나 보조도구를 확인하여 준비하기  
(예) 시각장애인 : 대독과 대필 가능한 인력, 청각장애인 : 수어통역사 등



## 조사 전 고지사항

### 의사소통 지원

-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력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 발달장애 또는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의사소통을 조력하거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4항 / 제5항 / 제6항  
[발달장애인법] 제12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 특별히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 진술조력인의 참여와 함께 영상녹화/국선변호인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19세미만 피해자 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제36조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진술조력인의 참여 대상 범위)  
[범죄수사 규칙] 제184조 (장애인에 대한 특칙)

- 발달장애인의 경우, 진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영상녹화를 권장합니다.

TIP

### 의사소통 조력 등의 설명

조사받을 때,  
도와 줄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진술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까?



참고 기사 (YTN 2024.10.19.)

“발달장애인 조사 때 가족 동석 가능 미고지는 위법...”

### 정당한 편의제공

-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하는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합니다. 장애인의 성별,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 제17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 장애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혜적인 배려나 조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헌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 문자통역, 보청기, 확대경, 문서변환 파일, 활동(이동) 지원 인력, 충분한 휴식시간 등 조사 시 장애로 인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 조사 중 유의사항

- 특정 시간에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 복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합니다.
-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목발, 기타 보조기구 등을 허락 없이 만지거나 위치를 옮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장애인의 보조기구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신체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함부로 만지거나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 장애인시설이나 친족 간 범행, 근로관계 등 장애인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위계관계나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장애인의 명확한 진술이 어려울 수 있으니 대질신문 등의 진행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전문적·기술적 용어는 충분히 풀어서 설명해주세요.
- 조사 시 긴장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추궁하거나 재촉하는 등의 말투나 행동은 자제하여야 합니다.
- 동정적 시각이나 말투의 사용을 피하고, 장애인의 호칭과 관련하여 하대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답변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육체적·정신적 피로감이나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도록 조사 도중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사  
후

## 조사 후 지원사항

- 피해장애인에 대한 가해자와의 분리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연계하여 피해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제1항 / 제2항
- 소환이나 사건 처분 통지 등도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개개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예) 시각장애인 : 전화 연락이나 확대문서 발송, 점자통지서 등을 활용  
청각장애인 : 전화 대신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활용

약 복용 등의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고 지원합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해야 합니다.



# 9 장애유형별 민원 상담 방법

## 응대 방법

### 뇌병변장애인을 만났을 때

- 언어장애로 인해 말을 이해하기 힘든 경우, 추측하거나 알아듣는 척하는 것보다 다시 묻고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의사소통 방법은 말과 같은 음성언어 뿐 아니라 눈짓, 표정, 손짓, 몸짓 등 상대의 행동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으로도 가능합니다.
- 필담, 모음자음판(카드), 컴퓨터의 워드 기능, 메신저, 의사소통보조기구(AAC)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합니다.
- 활동지원사의 통역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경우, 주체는 당사자임을 명심하고 직접 소통을 위해 노력합니다.
-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대화할 때 되도록 눈높이를 맞춰 이야기합니다.



## 응대 방법

###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 담당자는 인사 시 악수와 함께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 시각장애인에게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 등 주변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저시력인의 경우 보이는 정도와 시야에 대하여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 상담 진행 후 연락방법에 대해 당사자와 의논하여 결정합니다.  
(전자 우편, 문자, 직접통화 등)
- 전자 우편의 경우, 메일란에 내용을 직접 쓸 수도 있으며  
문서를 첨부하는 경우 텍스트 파일로 변환 할 수 있는 파일(hwp, doc, txt)이  
음성지원프로그램 활용에 편리합니다.
- 문자로 안내할 경우, 1회 문장의 길이는 당사자에게 확인하여 제공합니다.
- 저시력인이 자료요청 시, 확대문자로 받기를 원하면 각자의 시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가능한 문자크기(포인트)를 반드시 물어보고 원하는 크기로 확대해서 제공합니다.
- 시각장애인의 동의없이 안내견을 만지거나 먹을 것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은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합니다.



## 응대 방법

### 청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 <구화를 사용하는 경우>

- 입모양을 읽을 수 있도록 크고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 보청기(음성증폭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가까이에서 큰 소리를 지를 경우 소리가 증폭되어 불편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입모양을 읽는 의사전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담 사용 시 추상적인 언어보다 가급적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 이후 연락사항에 대해서는 문자를 이용합니다.

#### <수어를 사용하는 경우>

- 내담자가 원하는 수어통역사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자해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필담이 필요한 경우 명사, 동사 중심으로 간략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TIP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때



1. 상대방의 얼굴을 편안하게 마주 보면서 천천히 다시 물어보고, 시간을 갖고 답을 기다린다.

2. 메모지에 그림이나 단어를 써가면서 설명해보고, 답을 기다려본다.

3.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지원인 등)과 연락하거나, 부를 수 있는지를 물어본다.

응대  
방법

## 발달장애인을 만났을 때

- 선입견으로 발달장애 유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장애유무의 확인이 필요하다면, 당사자에게 직접 묻거나  
정중하게 장애인 복지카드를 보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 대화 시 되도록 짧은 문장을 사용하며,  
추상적인 단어보다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 식사하셨어요? => 밥 먹었어요? / 어디가 아파요? => 배가 아파요?
- 문자로 언어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림이나 사진 등 시각자료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묻는 말에 계속 “예”라고 대답하는 경향이 있다면  
대답을 구하기보다는 질문의 방식을 바꾸는 융통성있는 접근 자세가 필요합니다.
-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경우, 먼저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주변 자극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체로 발달장애인의 행동에는 특정한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흥분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차분하게 대처합니다.
- 성인 발달장애인을 아이 취급하거나 반말을 사용하는 행동은 옳바르지 않으며,  
나이에 맞게 대하여 결정권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10 수사과정에서의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규정

- \*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 **발달장애인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 ●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 검사·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신문하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자 동석하게 할 수 있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 범죄수사규칙 제61조 (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 ● 응급조치의무 등

- 학대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함
- 학대현장에 출동한자는 학대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함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①, ②

## ● 보조인의 선임 등

- 학대 받은 장애인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장애인학대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음
- 학대받은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본인 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 할 수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  
①, ②, ③

## ●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 피해장애인 및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
-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함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 ●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사건관계인에 대해 의사소통·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구체적 조력내용을 알려줘야 하며 조력을 신청하면 거부해선 아니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
-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각종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의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④, ⑤, ⑥

---

## ●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등

-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한국수어 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구금시설에서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할 수 있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7조  
①

---

## ●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 피의자 : ①보호자, ②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③신뢰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참여 可(수사기관의 허가 要)  
※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함이 바람직
- 피해자·참고인 : 본인·보호자·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의 신청이 있고,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신뢰관계자의 동석 허용(의무규정)

**발달장애인법**  
제12조  
②, ③, ④

---

## ●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

-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발달 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 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여야 함

**발달장애인법**  
제13조  
②, ③

---

## ● 19세미만 피해자 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함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 제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녹화를 하여서는 아니함
- 녹화를 할 때에는 조사과정이 녹화된다는 사실과 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함
- ※ 19세미만피해자등 :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사물변별·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성폭력처벌법**  
제30조  
①, ②, ③

---

## ●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음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성폭력처벌법**  
제36조  
①, ②

---

## ● 진술조력인의 참여 대상 범위

- 법 제36조(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수사과정  
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피해자 중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변별·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란 다음과 같다

-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록된 자
- ②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나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③ 그 밖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정서적 불안, 함묵증, 진술 회피 등으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

## ● 장애인에 대한 특칙

-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장애 등으로 사물변별·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보조인 선정하도록 권유하고, 보조인을 신뢰관계자로 동석하게 할 수 있음
- 성폭력 피해자가 언어·청각·시각장애인인 때에는 수화 또는 문자 통역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
-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지체인인 때에는 면담을 통해 진술능력 등을 확인하고 의  
사 전달이 곤란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인 또는 신  
뢰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할 수 있음

**범죄수사규칙**  
제184조

---

## ● 피의자의 유치 등

- 신체장애인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고,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하여야 함
-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화 통역사를 연계하는 등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제7조  
②, ⑤

#### ■ 참고문헌

- 장애인인식개선 가이드 (한국장애인개발원 발행)
- 장애인민원대응시 정당한 편의제공 매뉴얼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발행)
- 장애인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법원행정처 발행)
- 장애인차별상담을 위한 안내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발행)
- 장애유형별 피해자 조사 가이드 (대검찰청 발행)
- 장애인경찰조사 가이드라인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발행)
-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서울지방변호사회 발행)
- 경찰관을 위한 장애인학대 대응 안내서 (경찰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보건복지부 발행)

### 장애인 학대 대응 안내서 (경찰관 편)

발행처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  
발행일     2024.12.  
편집제작   젊은기획



11485) 경기도 양주시 고삼로43번길 28, 경기도북부장래인복지종합지원센터 306호  
전화 031-851-1007 / 팩스 031-851-1008 / 메일 ggndrc@gmail.com / 누리집 www.ggnaapd.or.kr

**장애인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할 경우**

국번없이 **1644-8295**로 전화하시면  
발신지와 가장 가까운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자동연결 됩니다.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